

「평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5월 7일, 평창군수 제출
- 회부일자: 2024년 5월 17일 회부
- 상정일자: 제29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24년 5월 17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환경과장)

가. 제안이유

- 현행 조례상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RFID무선주파수(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관련 목적 및 정의를 신설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감량을 위한 기기 보조금 지원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명시하여 안정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정의 신설(제2조)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및 RFID 종량제 방식 용어 추가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징수(제9조)

- RFID 종량제 방식 추가 도입 및 RFID 계량 수수료 추가

○ 배출방법(제10조)

- RFID 종량제 방식 설치 운영하는 곳에서는 전용 계량용기에 배출

○ 공동보관시설 등 설치(제12조)

-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RFID를 설치

○ 감량기기의 지원(제14조의 2)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영옥)

※ 검토보고서 전문 [붙임 1]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없음」

6. 심사 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사항: 「없음」

붙임 1. 평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2. 평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제29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4. 5. 17.)

「평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 영 옥)

「평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조례안 개요

- 제 안 자 : 평창군수 제출
- 제안일자 : 2024. 5. 7.
- 회부일자 : 2024. 5. 17.
- 상정일자 : 2024. 5. 17.

2. 제안이유

- 현행 조례상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RFID무선주파수(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관련 목적 및 정의를 신설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감량을 위한 기기 보조금 지원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명시하여 안정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정의 신설(제2조)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및 RFID 종량제 방식 용어 추가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징수(제9조)
 - RFID 종량제 방식 추가 도입 및 RFID 계량 수수료 추가

○ 배출방법(제10조)

- RFID 종량제 방식 설치 운영하는 곳에서는 전용 계량용기에 배출

○ 공동보관시설 등 설치(제12조)

-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RFID를 설치

○ 감량기기의 지원(제14조의 2) 신설

4. 검토의견

가. 관련 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서 지자체장은 생활폐기물 처리 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수수료는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 등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4조의3에서 지자체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억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입법의 취지

- 기술의 발달 및 주민 요구 다변화 추세에 맞춰 적합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방식을 도입하고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감량기기를

지원하여 청소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 안 제2조(정의)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와 RFID 종량제 방식의 정의를 추가함.
- 안 제9조, 제10조, 제12조에서는 RFID 종량제 방식 도입에 따른 배출방법, 계량 종량기 설치 등의 사항을 조문에 반영함.
- 안 제14조의2(감량기기의 지원)에서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감량기기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

5. 종합검토의견

- 환경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 지침」에 따르면 자원화에 부담이 되는 종량제 봉투방식은 예외적 적용례를 제외하고 사용을 제한, RFID 또는 칩 등의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고, 상위법령에서 폐기물 발생 억제에 대한 지자체의

자구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의 입법취지는 합당하고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없이 규정된 것으로 확인됨. 다만, RFID 기반 방식 도입 시 폐기물 처리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므로 어르신 등 주민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사업 시행 전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할 것으로 사료됨.

□ **종량제 방식의 적용방법**

1)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기반 방식

- RFID 기반 종량제 방식에는 차량계량 방식, 개별계량 방식, 휴대형리더기 방식이 있음
- RFID 기반 종량제 방식은 인식장비, 계량장비, 음식물류폐기물 보관장비, 자료관리 서버시스템 등이 필요
 - 정보전송 및 수집 등을 위한 서버시스템은 환경부(한국환경공단)에서 통합적으로 운영
 - ※ DB, 웹서버, 과금을 위한 자료 연계 등 포털서비스 제공

(1) 차량 계량 방식

- 차량계량 방식은 개별 또는 거점용기 수거 시 수거차량에 탑재된 계량장치를 이용하여 배출량을 계량하고, 용기에 부착된 전자태그를 통해 배출자 및 배출량 정보를 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하는 방식
- 수수료는 배출자의 저장자료를 이용하여 산정하게 되며 후납제 적용
- 대형 음식점 또는 공동주택에 적용 가능

(2) 개별계량 방식(거점장비 수거부스)

- 개별계량 방식은 배출자 인식장비, 투입 및 계량장비,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장비, 통합 자료관리 시스템과의 연계설비(또는 내부자료 저장설비)가 일체 장착된 방식
- 배출자가 전자칩 또는 카드, 기타 방법으로 배출자를 인식시키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투입구에 투입, 계량 후 음식물류폐기물을 보관용기에 자동 보관

하고 통합 자료관리 시스템(또는 내부자료 저장설비)로 전송하는 방식

- 수수료는 선납제 또는 후납제 선택 가능
- 공동주택 또는 단독주택에 적용 가능

(3) 휴대형리더기 인식 방식

- 용기에 전자태그를 부착,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 리더기로 배출자를 인식하고 배출횟수 정보를 관리시스템에 전송- 수수료는 저장자료를 이용하여 산정하며 후납 징수

2) 칩(스티커) 방식

- 배출자가 개별용기에 칩이나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
- 배출횟수에 비례하여 수수료 부과
 - 단독주택 개별용기 및 공동주택 거점용기에 적용 가능
- 수수료는 칩이나 스티커 구입비용으로 정산하는 선납제-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비용정산

3) 종량제봉투 방식(예외적으로만 사용)

- 배출자가 종량제봉투를 구입
 - 봉투를 직접 배출하거나 거점수거용기에 배출
 - 수수료는 종량제봉투 구입비용으로 정산하는 선납제
- ※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제품(사료·퇴비)의 품질제고를 위해 단계적으로 종량제 봉투의 배출을 금지하고, 전용 용기 등 환경부담이 적은 방식으로 전환 유도
토록 조정 (국가정책조정회의 2012. 6. 8.)

[붙임 2]

**평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 평 창 군 수

평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77
----------	-----

제출년월일 : 2024. 5. 7.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현행 조례상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RFID무선주파수(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관련 목적 및 정의 신설 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감량을 위한 기기 보조금 지원에 대해 현행 조례보다 구체적으로 보완·명시하여 안정적인 지원 근거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정의 신설(제2조)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및 RFID 종량제 방식 용어 추가

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의 징수(제9조)

- RFID 종량제 방식 추가 도입 및 RFID 계량 수수료 추가

다. 배출방법(제10조)

- RFID 종량제 방식 설치 운영하는 곳에서는 전용 계량용기에 배출규정 신설

라. 공동보관시설 등 설치(제12조)

-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RFID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 신설
다. 감량기기의 지원(제14조의 2) 신설

3.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 별첨

나. 예산 조치 : 2024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에 100,000천원 계상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4. 3. 28 ~ 2024. 4.1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 5) 법제심사 : 적정[기획실-6695(2024. 4. 26.)]
- 6)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원안의결[기획실-6890(2024. 4. 30.)]

평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를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로 한다.

제2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이하”감량기기”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건조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발효건조·퇴비화·사료화·부숙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는 기기를 말한다.

8. “RFID 종량제 방식”이란 무선주파수(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를 이용하여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전용수거용기”를 “전용수거용기, RFID 종량제 방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납부고지하여”를 “선불 또는 납부고지 등으로”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는 별표 2 와 같다.

제10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RFID 종량제 방식으로 설치·운영하는 곳에서는 전용계량용기에

배출할 것

제12조제2항 중 “공동보관시설 또는 공동전용수거용기”를 “공동보관시설, 공동전용수거용기 또는 개별계량 종량기(RFID 기반)”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감량기기의 지원) ① 군수는 예산 범위 내에서 감량기기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아 감량기기를 설치·사용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1. 가열·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 감량률이 높은 감량기기를 설치·사용할 것

2. 감량기기는 내구성과 실용성을 갖추어 사용이 간편하며, 공인기관이 품질을 검증한 제품을 설치할 것

3. 제2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음식물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감량기기는 지원에서 제외할 것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7년 이내 재신청할 수 없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평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제9조제5항 관련)

1. 계량 형태별 수수료

구 분	수 수 료	내 용
무게형	30원/kg	무게측정 수수료

2. 음식물 전용봉투

평창군 폐기물 관리조례 [별표 2] 음식물전용 종량제봉투 가격과 같다.

<신 설>

제12조(공동보관시설 등 설치) ①
(생 략)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재활용을 위한 공동보관시설 또는 공동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생 략)

<신 설>

3. RFID 종량제 방식으로 설치

· 운영하는 곳에서는 전용계량용기에 배출할 것

제12조(공동보관시설 등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 공동보관시설, 공동전용수거용기 또는 개별계량 종량기 (RFID 기반)-----
-----.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감량기기의 지원) ①

군수는 예산 범위 내에서 감량기기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아 감량기기를 설치·사용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1. 가열·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 감량률이 높은 감량기기를 설치·사용할 것
2. 감량기기는 내구성과 실용성

을 갖추어 사용이 간편하며,
공인기관이 품질을 검증한 제
품을 설치할 것

3. 제2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
은 경우에도, 음식물을 분쇄하
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감
량기기는 지원에서 제외할 것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7년 이내 재신청할 수
없다.

관 계 법 령 발 취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②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처리 신고자”라 한다)는 생활폐기물 중 폐지, 고철, 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 우려가 없는 전용 탱크·용기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0. 7. 23., 2013. 7. 16.>

④ 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수집한 생활폐기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신설 2013. 7. 16.>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중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직접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자(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제25조제5항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폐기물처리 신고자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2. 6. 1., 2013. 7. 16.>

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 산정에 필요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16.>

⑦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등의 제작·유통·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0. 7. 23., 2013. 7. 16.>

⑧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0. 7. 23., 2013. 7. 16., 2014. 1. 21., 2015. 1. 20., 2020. 5. 26.>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최초의 원가계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서 규정하는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야 한다.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실적 평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대행실적을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평가일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내용을 계약일부터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5. 제4호에 따른 대행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계약만료 후 6개월 이내에 대행비용 지출내역을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6.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행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 가. 「형법」 제133조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나.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6조 또는 제357조(제347조 및 제356조의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벌금형의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에 한정한다.)
 7.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계약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⑨ 환경부장관은 생활폐기물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의 자료 제출 및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0. 7. 23., 2013. 7. 16., 2014. 1. 21., 2019. 11. 26.>

⑩ 환경부장관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제9항에 따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정적 지원의 중단 또는 삭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26.>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②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그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에서는 분리·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2019. 11. 26.>

③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 매년 2월 말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의 위탁 처리 실적과 처리방법,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6.>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한 자의 처리실적을 관할구역 내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에 포함하는 등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6.>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을 줄여서 배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려는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시설의 종류 및 설치·관리 기준, 지원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7. 11. 28., 2019. 11. 26.>

[제목개정 2013. 7. 16.]

비용추계서(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감량기기 구입비 지원 신설

나. 관련조문

○ 안 제14조의2(감량기기의 지원)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감량을 위한 기기 구입비 일부 지원” 신설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평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4조의2(감량기기의 지원)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감량기기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므로 예산 증액이 수반되어야 함.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지원 예산규모(본예산 기준)

(단위 : 천원)

연도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예산액	-	-	-	-	-

나. 추계 결과

- 평창군 22,008세대수(평창군 통계자료 2023.12월 기준)에 대하여 모두 지원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임.
- 매년 200가구 정도를 지원대상으로 구입금액의 80%(최대 50만원) 으로 매년 100,000천원 예산편성 필요

다. 재원조달 방안

- 평창군 자체수입(군비)으로 조달

3.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경제건설국 환경과장 전원표
연락처	(033) 330 - 2340

